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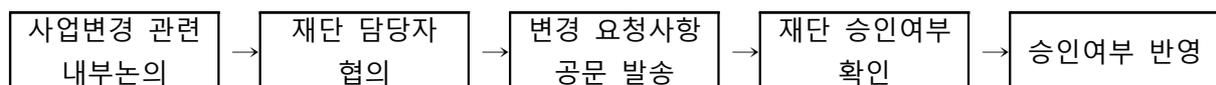
국민연금나눔재단 사업 및 예산변경 요청 절차

<2022.1.1.>

< 사업 및 예산변경 원칙 >

- 물가변동, 참여 클라이언트 수의 증감 등의 사유로 기존 사업계획서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고,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세부 프로그램을 개발·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
- 단, 예산항목의 재설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함
예외적으로 당초 계획서의 항목설정이 미비하여 집행에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항목을 재설정할 수 있음
- 잔여사업비를 사용하기 위한 예산전용 지양
- 사업 및 예산변경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, 변경 세부내역을 재단과 협의 후 공문 요청하고 최종 승인결과 통보사항 확인 후 사업 및 예산을 변경함
- 사업 및 예산변경 가능기한 : 사업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가능
- 단, 사업기간 6개월 이하의 단기사업은 사업종료일로부터 2주일 이전까지 가능
 - 재단 변경 요청 및 내부변경 건을 모두 포함한 변경 가능 기한임
 - 재단에 변경 요청 후 승인까지의 시간적 소요가 크므로 사업 진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2~3주의 여유 기간을 가지고 신청 완료해야 함

< 사업 및 예산변경 절차 >



- 반드시 재단의 변경요청 승인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함.
- 예산의 변동 없이 사업 실시 시기 등 프로그램 내용만 일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, 상·하반기 사업평가서 작성 시 변경내용을 별도로 기재함.
단, 사업변경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시 원상복귀 조치를 취할 수 있음

< 사업변경 불가 사항 >

- 사업변경으로 인해 당초 사업목적(목표) 및 기획의도 등이 변경되는 경우
- 인건비 또는 재산조성비(기자재 등) 관련 항목을 신설 또는 증액하는 경우

< 예산 변경 안내 >

• 예산변경 기준

- 예산항목 중 인건비 목의 경우 예산조정이 불가함.

☞ 단, 채용시기의 지연 또는 담당인력의 변경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은 사업에 한해, 잔액을 재단의 승인 후 전용은 가능함.

- 예산변경 가능기한 이후, 모든(재단 승인, 내부승인) 예산전용이 불가함.

구분	내용	
배분금(1개소)	500만원 이하	500만원 초과
예산변경 범위	100만원 이하(누적금액)	20% 이하(누적비율)
예산변경 항목	세목 간, 세세목 간	세목 간, 세세목 간
비고	단, 예산변경 누적금액이 총 배분금의 50% 초과시 재단 승인필요	단, 예산변경 누적금액이 1천만원 초과시 재단 승인 필요

<배분금별 예산변경 기준>

※ 예산변경 누적금액은 내부승인 금액과 재단 승인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반영함

※ 최종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세세목이 없는 경우, 세목 간만을 예산 변경 항목으로 봄

※ 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'목간 전용' 및 '신규 세목과 세세목, 산출근거 추가' 시에는 재단 승인 필요

<배분금별 세목 간·세세목 간 예산변경 기준>

500만원 이하 배분사업			500만원 초과 배분사업		
배분금액 (만원)	변경한도 (만원)	총 배분금액 대비 자체승인 가능 변경 비율	배분금액 (만원)	변경한도 (만원)	총 배분금액 대비 자체승인 가능 변경 비율
500	100	20%	100,000	1,000	1%
400	100	25%	50,000	1,000	2%
300	100	33.30%	10,000	1,000	10%
200	100	50%	5,000	1,000	20%
100	50	50%	2,000	400	20%
50	25	50%	1,000	200	20%

** 예시 **

- 배분금액이 3천만 원인 경우, 자체승인은 변경 누적금액 6백만 원 이하 범위에서 가능
- 배분금액이 7천만 원인 경우, 자체승인은 변경 누적금액 1천만 원 이하 범위에서 가능

• 예산변경 시 유의사항

- 사업 및 예산변경 가능기한 : 사업종료 1개월 이전

- 변경요청 후 동의까지의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기한 2주일 이전까지 본 요청서를 제출 완료함.

□ 변경요청서는 '공문'과 변경내용이 반영된 '수정사업계획서'를 함께 첨부하여 홈페이지 접수 또는 담당자 이메일 발송(**담당자 안내에 따름)

- 본 변경요청서는 재단의 최종 동의를 받은 후부터 적용이 가능함

- 배분협력기관 중 2차 배분기관의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

- 배분협력기관 : 2차 배분기관으로 지원하는 배분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

- 2차 배분기관 : 배분금액별 예산변경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배분협력기관을 통해 예산변경

※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, 예산 변경 업무 처리에 있어서 컨소시엄 대표기관을 배분협력기관으로 봄

• 예산변경 가능항목 안내

목	세목	세세목	계	산출근거	신청금액
총 계			4,000,000	-	4,000,000
세목 간 전용	사업비 제과제빵 프로그램	강사비	600,000	150,000원×4회 = 600,000원	600,000
		재료비	1,600,000	25,000원×16명×4회 = 1,600,000원	1,600,000
		물품구입비	150,000	150,000원×1회 = 150,000원	150,000
	요리 프로그램	강사비	300,000	150,000원×2회 = 300,000원	300,000
		재료비	1,024,000	32,000원×16명×2회 = 1,024,000원	1,024,000
		물품구입비	246,000	123,000원×2회 = 246,000원	246,000
소계			3,920,000	-	3,920,000
목간 전용	관리운영비 오리엔테이션	현수막 제작비	40,000	40,000원×1회 = 40,000원	40,000
		다과비	40,000	2,500원×16명 = 40,000원	40,000
	소계			80,000	-

- 목간전용 : 관-항-목 중 목에 해당하는 사업비, 관리운영비를 전용하는 경우
(예: 관리운영비 내의 다과비 예산 중 일부를 사업비 내의 요리프로그램으로 투입하는 경우)
 - 세목 간 전용 : 관-항-목 중 동일한 목 안에 있는 세목끼리 전용하는 경우
(예: 사업비 내에 있는 '제과제빵프로그램'의 예산 중 일부를 '요리프로그램'으로 투입하는 경우)
 - 세세목 간 전용: 관-항-목-세목 중 동일한 세목 안에 있는 세세목끼리 전용하는 경우
(예: 제과제빵프로그램 내에 있는 '강사비' 예산 중 일부를 '재료비'로 투입하는 경우)
- (※ 최종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세세목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)

< 기타 변경사항 통보 >

- 기관 정보 관련 변경사항
 - 사업수행기관의 전화번호, 주소, 운영법인 등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1주일 내에 재단에 변경내역을 통보해야 함(변경 전/후 내역 기재)
- 사업 주담당자 변경사항
 - 담당자 변경 시, 사전에 재단 담당자와 협의 후 신규 담당자 선임 1주일 내에 반드시 변경내역을 통보해야 함.
 - ※ 잦은 담당자 변경은 사업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
- 네트워크 및 기관 간 컨소시엄에 관한 변경사항
 - 기관 간 컨소시엄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컨소시엄에 변동사항 발생 시(기관 중도 탈락 등) 재단에 즉시 통보해야함

연금복지관

수신 재단법인 국민연금나눔재단 이사장(사업 담당자)
(경유)

제목 「00사업」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 검토 요청

- 귀 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- 「00사업」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사업운동을 위해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변경내용 및 사유

1) 오리엔테이션 횟수 감소 및 예산 감액

- 기존 8회 진행 예정이었으나 동일 교육 이수율이 높아 7회로 축소 운영하고 관련 예산 감액하고자 함.

2) 상담교육 교육 다과비 예산 증액

- 참여 인원 증가 및 물가 상승에 따라 다과비 예산 증액하고자 함.

나. 세부내역

(단위 : 원)

구분			변경 전		변경 후		증감내역	비고
목	세목	세세목	금액	산출근거	금액	산출근거		
사업비	조직 강화	오리엔테이션	800,000원	[교육진행비] - 100,000원 × 8회	700,000원	[교육 진행비] - 100,000원 × 7회	-100,000원	-
	상담 교육	교육	500,000원	[전문교육 강사비] - 150,000원 × 1h × 3회 [다과비] - 5,000원 × 10명	600,000원	[전문교육 강사비] - 150,000원 × 1h × 3회 [다과비] - 7,500원 × 20명	+100,000원	-
계			1,300,000원	-	1,300,000원	-		

다. 총 배분금액 대비 예산변경 누적비율 : 18.0%

총 배분금액(A)	예산변경 신청금액	예산변경 누적금액(B)	예산변경 누적비율(B/A)
10,000,000원	1,300,000원	1,800,000원	18.0%

붙임 00수정사업계획서 1부. 끝.

↑ 예산변경 누적금액은 기 변경된 내부승인과 재단 승인 건을 합산하여 표기함

연금복지관장[직인]

담당 협조자
성명 _____
시행 문서번호 _____
우편번호 _____ 주소 _____
전화 _____ 담당자 번호 _____

사무국장 성명 _____
접수 ()
전송 팩스 번호 _____

기관장 성명 _____
()
담당자 이메일 _____

홈페이지 _____